

의안번호	2212304
의 퇴 인	박홍배의원
회 답 일	2025.11.20.
추계번호	25B466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 (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u>기술·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u> 4. <u>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 (해외진출 지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 사업과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임

- 법 제13조 및 제14조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 물기업

1)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공법 또는 제품(부품·장치·기기·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장치·기기·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21조²⁾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인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표 1]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25년 기준)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수행 기관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글로벌 물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우위가 가능한 중 소기업 선정 및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5,000	한국 물산업 협회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물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주요 진출 유망국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통한 진출전략 수립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100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해외 물시장 개척 지원)	민관협력 해외진출 시범사업	정부-공공기관-물기업 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 고,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G2G 협력, 기술·행정분야 등 지원	23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수행 기관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기타 물산업 정책 지원)	물산업 동반성장 여건 조성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지원, 국제공동 물분야 기술개발 협력 시범사업, 전문가 초청 협력세미나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200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장성이 높은 유망 권역의 시장 선점 및 진출 활성 화를 위한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국제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포럼·마케팅 등 지원	220	
한국물기술 인증원 운영 (한국물기술 인증원 운영)	해외 인·검증 지원사업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인증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인증 지원	403	한국 물기술 인증원
	미국 NSF 인증대행 사업	국내 물기업의 NSF 취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 작성, 시료 배송 및 제품시험 등 전 과정 지원	762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출물류(운임 등), 해외인증(취득·갱신 등), 사업화(해외 법인설립, 국외출장 등) 등 중소기업 수출 필수사항 원스톱 지원	575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해외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해외 수요처 확보된 물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현지 실증화 지원	150	

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예산으로 수행 중인 사업 현황이며, 기관 자체 사업 등 별도 지원
사업 존재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행 중인 해외 물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에 따라 추진 중임.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에 따라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 사업과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사업을 추가할 경우,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의 규모와 향후 확대 시행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